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산정방식 변경〉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69호)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5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산정방식 변경	4
<참고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연혁 및 개정 사유	15
<참고2> 시·도교육비특별회계 규모	16

I. 제안경위

【조은회의원안】

1.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9.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이헌승의원안】

1. 발 의 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3.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은회의원안】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의

증감과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으로 증가시켜 초·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고등교육·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는 재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국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내국세 정률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등).

【이헌승의원안】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은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산정방식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조은희의원안, 이현승의원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산정방식인 내국세 정률 연동방식(내국세의 20.79%)을 폐지하고, 경제여건,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조은희의원안	이현승의원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	② ----- ----- -----.
1. 해당 연도 내국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	1.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다)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 ----- ----- ----- ----- ----- ----- ----- -----

현행	조은희의원안	이현승의원안
<u>다. 이하 같다] 총액</u> <u>의 1만분의 2,079</u> 2.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제4조(<u>교부율의</u>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u>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u>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교부금 재원으로 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조(<u>교부금의</u> 보정) ① ----- ----- ----- -----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금-----.	-----총액 에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조은희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u>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u>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u> ② . ③ (생략) 제9조(예산 계상) ① (생략) ② <u>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u>	② -----<u>교부금</u>----- ----- ----- -----.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u>제3조제4항</u>-----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 계상)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조은회의원안	이헌승의원안
<u>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u> ③ <u>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u>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u>제3조 제4항에 따라</u>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u>교부금의</u>----- ----- ----- ----- -.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 ----- ----- ----- ----- ----- -----제3조 제5항-----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규모가 결정되고,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¹⁾.

-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이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및 재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법정교부율이 2001년 13%, 2005년 19.4%, 2008년 2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²⁾.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연혁 및 개정 사유 (15페이지)

□ 그런데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정률(내국세의 20.79%) 연동방식은 국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 교육재정에 배분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부금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세수가 증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교육재정 수요와 교부금 규모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세수 호황에 따른 교부금의 단기적인 증가가 초·중등 교육재정의 과도한 지출 규모 확대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최근 10년간 학령인구 대비 지방교육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학령인구(만3세~만17세)는 2016년 737만명에서 2026년 57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연평균 2.5% 감소)인 반면, 교부금 규모는 같은 기간 43조 원에서 76조원으로 증가하여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590만원에서 1,340만원으로 크게 증가(연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령인구 대비 지방교육재정 추이 >

(단위: 백만원, 만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161,502	44,718,497	49,540,693	55,248,823	53,511,172	59,595,796
학령인구(만3~17세)	737	718	701	684	674	661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5.9	6.2	7.1	8.1	7.9	9.0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44,956	65,363,666	64,620,773	70,281,203	76,438,086	5.9
학령인구(만3~17세)	644	629	613	594	570	△2.5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11.8	10.4	10.5	11.8	13.4	8.6

※ 학령인구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3.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교부 기준, '26년도 추경예산(세계잉여금 정산분 미포함)

□ 이에 두 개정안(조은회의원안, 이현승의원안)은 현행 교부금의 재원 산정 방식인 내국세 정률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 비교 >

구 분	현 행	조은회의원안	이현승의원안
교부금 재원	①내국세 총액의 20.79%	①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 포함)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단, 교부금 하한은 전년도 예산액의 95%	①내국세 총액에 <u>학령인구, 교육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u>
	②교육세 일부 ³⁾	②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교부금 조절	-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	- 삭제	-현행과 같음

- 조은회의원안은 교부금 재원을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포함)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금 하한은 전년도 예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 하여 조절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있음.

3) 교육세입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이현승의원안은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두 개정안 모두 ‘교육세 일부’를 현행과 같이 교부금 재원으로 유지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정률 연동방식을 개선하여, 경제 여건, 학령 인구 및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교부금 규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안 심사 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우선,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2025년 기준 69%)으로⁴⁾,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은 시·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와 교육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교부금 규모의 급격한 변동이나 지속

4)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2025년 가결산 기준) >

구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 수입	내부 거래	기타	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증액 교부금*	국고 보조금	특별회계 전입금**					
금액(억원)	702,812	4,729	4,831	32,309	157,377	9,740	50,292	56,871	1,018,961
비중(%)	69.0	0.5	0.5	3.2	15.4	1.0	4.9	5.6	100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자료: 교육부)

적인 감소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단기간에 축소하기 어려운 경직성·필수적 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부금 규모를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조정하더라도 실제 교육재정 수요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은희의원안은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95%로 설정하고 있는데, 95%의 하한 수준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두 개정안은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정효과를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교부금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부금 산정기준의 불확실성은 시·도교육청의 재정계획 수립과 교육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따라서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할 경우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과 기본적인 산정원칙은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5)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개정안 모두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교부금 재원의 증감이 예상되나, 조은희의원안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증감률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현승의원안은 학령인구 및 교육재정 수요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동비율의 산정방식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부금 재원의 증감 규모를

□ 아울러, 두 개정안은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교육세 일부’를 현행과 같이 교부금 재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교부금 조절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은희의원안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 조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반면, 이현승의원안은 이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세 일부를 계속하여 교부금 재원으로 유지하는 경우 교육세의 증감에 따른 교부금 조절의 필요성과 그 조정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는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내국세 정률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2026.8.21.)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시 정부의 개편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개편 방안 >

구 분	현 행	개편 방안
교부금 재원	- 내국세 총액의 20.79% - 교육세 일부	-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의 <u>연평균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연평균 변화율(35%)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u> - 해당 연도 교부금이 <u>전년도 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u>
교부금 조절	- 추경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	- 삭제

추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6.7.29.).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 내국세 연동에 따른 재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고등·평생 등 타 교육 분야로의 균형있는 재정 분배가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함
- 다만, 지방교육재정은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크고 그 규모가 지속 증가 중으로, 학령인구 증감률을 그대로 반영하여 교부금을 산정할 시 경직성 필수비용에 대한 대응 및 기타 실질적인 교육투자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또한 해당연도 경제성장률 예측치에 근거한 교부금 규모의 산정은 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해당연도 국가 경제상황에 따른 교부금 규모의 큰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여, 현행 제도 대비 안정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지방교육교부금의 변화는 넓게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바, 구체적인 산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교부금 재원과 규모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시도교육청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 신중 검토

- 내국세의 20.79%는 법정 재원보장 장치로, 학령인구·교육재정수요라는 불분명한 표현과 재정당국의 여건에 따라 내국세 연동 비율이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
- 교부금 대부분이 시설·인건비 등 필수고정경비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교부율의 감소는 각종 교육사업비 및 보편 교육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와 학부모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육재정의 총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재정당국 등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법률에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연혁 및 개정 사유 (자료 : 교육부)

제·개정 (시행)	변동 비율	변동 사유
'59. 12월 제정 ('59. 1월)	10.5% ('68. 7월~)	○ '59년 신설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작으로 '68년부터 내국세와 처음으로 연동 - '68년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5%, 국민학교교원 봉급 전액 등으로 구성되었고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0% 해당하는 금액
'71. 12월 제정 ('72. 1월)	12.98%	○ '71년 교부금법이 제정되었으나, '72년 「경제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82. 4월 폐지)에 의해 '73~'82년 교부율 효력 정지 - 국가예산으로 확보 지원(연평균 내국세의 10.85% 수준) ※ '72년 「지방교육교부세법」과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82. 4월 개정 ('82. 4월)	11.8% (1.18%↓)	○ '71년 제정법률은 11.8%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보통교부금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규정하여 내국세의 총 12.98% - '82년 개정법률에서 특별교부금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총 교부율은 내국세의 11.8% * '91년부터 교부금 총액의 11분의 1로 교부
'00. 1월 개정 ('01. 1월)	13.0% (1.2%↑)	○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에 따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인상
'04. 12월 개정 ('05. 1월)	19.4% (6.4%↑)	○ 지방교육재정 구조 단순화 등을 위해 기존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등을 내국세 대비 비율에 통합 *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특별교부금 외에 별도로 증액 교부 가능
'06. 12월 개정 ('08. 1월)	20.0% (0.6%↑)	○ 기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유아교육지원사업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
'10. 1월 개정 ('10. 1월)	20.27% (0.27%↑)	○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국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내국세 감소로 줄어드는 교부금 보전
'18. 12월 개정 ('19. 1월)	20.46% (0.19%↑)	○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국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 11%→15%) -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내국세 감소로 줄어드는 교부금 보전
'19. 12월 개정 ('20. 1월)	20.79% (0.33%↑)	○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국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 15%→21%) -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내국세 감소로 줄어드는 교부금 보전

참고 2

시·도교육비특별회계 규모(25년 가결산 기준 101.9조원) (자료 : 교육부)

세 입		세 출	
중앙정부 이전수입 (74.5조원) [73.1%]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70.8조원) [69.4%]	①보통(67.7조원):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6.2% +국세 교육세** 일부(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개별 소비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	⇒ 인건비 (56.4조원) [58.4%] 교원, 교육전문직, 기타직 등 인건비
	국고 보조금 (0.5조원)	②특별(2.5조원):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8%	⇒ 전출금 (18.1조원) [19.1%]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전출금
	특별회계 전입금 (3.2조원)	③증액(0.5조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23.75%(47.5%의 절반)	
지자체 이전수입 (15.8조원) [15.4%]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국세 교육세 일부 + 국고보조금)	자본지출 (13.8조원) [14.3%] 학교신설,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 등	
	①지방교육세(7.6조원): 취득세액의 20%, 등록세액의 2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 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3.99%,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	⇒ 물건비 (3.9조원) [4.0%] 공공요금·수용 비 등·운영비, 여비 등	
	②담배소비세(0.6조원):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이전지출 (4.1조원) [4.2%] 지자체 보육료 보조 민간이전지출 등	
자체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6.7조원) [6.5%]	③시·도세(4.2조원):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특별시 10% 광역시 및 경자제도 5% 그밖에 도 3.6%) 및 지특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 내부거래 (0.3조원) [0.3%] 기금 전출금	
	④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0.2조원): 학교용지 확보 경비의 50%	⇒ 예비비 등 (0.1조원) [0.1%] 자연재해 대비 등	
	⑤지자체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0.1조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5%		
내부거래 (5.0조원) [4.9%]	⑥교부금 보전금(1.3조원):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 6%)의 20.27%	⇒ 결산상 잉여금 (5.3조원) 이월액, 보조금반환, 순세계잉여금 등	
	⑦기타(1.9조원): 교육급여보조금 급식비보조금 등		
	기타 (3.4조원)		
	자체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6.7조원) [6.5%]		
	내부거래 (5.0조원) [4.9%]		

문 의 처
02)6788-5185